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신건강 상태 검사 시 기초학력진단검사 병행 등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63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정신건강 상태 검사 시 기초학력진단검사 병행 등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12. 29.
3. 회 부 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불안·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단순한 정서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중단,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적 건강 위주의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심리·정서적 불안과 이로 인한 학습 부진 등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분리하여 진단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

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중요성을 제고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

Ⅲ. 검토의견

1. 정신건강 상태 검사 시 기초학력진단검사 병행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 검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정신건강 상태 검사 시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u>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u>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건강검사 등) ① ----- ----- <u>질병의 유무</u> <u>또는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한 건강</u> <u>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u> <u>다.</u>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u>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② ----- ----- <u>할 때에</u>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u><신설></u>	③ ~ ⑥ (현행과 같음) <u>⑦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 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u>
<u>⑦</u> (생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학생 건강검사는 「학교보건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며, 성장기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와 건강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학생건강검사규칙」은 건강검사를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함¹⁾.

< 학생 건강검사 개요 >

검사항목	대상 학년	주요 내용
신체 발달상황	초1 ~ 고3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건강조사	초1 ~ 고3	표본학생 건강조사표 사용 - 조사결과 분석 후 학교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참고
정신건강	초1·4/중1/고1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실시
건강검진	초1·4/중1/고1 * 구강검진은 초등 전체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초등 전체학년), 병리검사(학교 건강검사규칙규칙 제5조) - 검진기관에서 실시 하며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결과 분석자료는 학교 건강증진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1)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②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 최근 학생 마음건강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자살 학생 수도 증가 추세²⁾를 보이는 등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학교보건법」의 건강검사 관련 조문에 정신건강 상태 검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학생의 심리·정서적 불안과 그로 인한 학습 부진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 상태 검사 시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 개정안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학생의 정신건강과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학생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개정안의 입법실익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보건법」 제2조는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 검사가 포함됨을 이미 명시하고 있으며³⁾, 현재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초1·4, 중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자살 학생 수(명): ('20.) 148 → ('21.) 197 → ('22.) 194 → ('23.) 214 → ('24.) 221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또한 교육부는 최근 정기 검사 외에도 수시검사 성격의 ‘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여 이를 확대하려는 추세에 있는바, 개정안은 상시적 점검체계 확충 흐름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음.

□ 둘째, 학생 정신건강과 학습 부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학교보건법」보다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존의 분절된 진단 및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기초학력 부족·심리적 어려움·아동학대 등 학생의 복합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따라서 정서적·학습적 문제가 상호 연관된 사안이라면, 이를 통합지원체계 내에서 연계하여 해결하는 것이 법률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의 건강검사 체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은 건강검사의 여러 종류 중 학생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 즉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3)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 그런데 개정안 제7조제2항과 같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할 경우, 해당 규정은 건강검진에 관한 조문이 아닌 건강검사 전반에 관한 규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검사 전체를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여 기존 건강검사 체계와의 충돌 우려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신건강 상태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제안 이유에는 동감함
- 다만, 학생 건강검사는 건강검진(질병 유무 검사)*, 신체 발달상황, 신체 능력검사, 건강조사(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검사로 구분되는데, 검진 가능 병·의원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 외 다른 건강검사를 검진기관에서 실시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 척추, 눈, 귀·코·목병, 병리검사, 구상검사 등을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실시

구분	검토 의견
신체 발달상황	키, 몸무게만을 측정하기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토록 하는것은 비효율적임 (현재 검진대상 학년은 검진기관에 위탁 실시)
신체 능력검사	검사항목인 오래달리기, 스텝검사, 등을 검진기관에서 실시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현행과 같이 학교에서 실시 필요
건강조사	개인별 식생활 습관, 위생관리, 안전의식, 신체활동 등에 대한 자기기입식 조사로 검진기관을 통해 실시토록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 우려
정신건강 상태조사	현재 학교에서 실시중인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국내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 부족 등

- 아울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와학생의 학력 수준을 연계시키는 행정 운영은 해당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와 심리적 위축 초래 우려
- 또한, 기초학력 진단검사(3월~4월초)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4월)의 실시 시기를 고려할 때, 별도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는 운영상 적절하지 않음

○ 시·도교육청

(울산·인천·충남·광주·충북·전남·부산): 신중검토

- 학생건강증진이 목적인 학교보건법에 타 법령 상 검사를 포함하는 것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기초학력진단검사는 기초학력 지원대상 발견·지원이 목적인데, 건강검사와 병행될 경우 검사 주체와 책임, 사후 조치 등 과정에서 현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 정신건강 문제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기초학력 수준과 연계 시 정신건강 위기학생은 학습부진 학생이라는 편견을 갖게 할 우려도 있음 (대전): 일부수정 - 추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오해될 수 있으므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로 개정안 수정
○ 서울대학교: 일부수정 - 개정되는 조항 적용 대상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제외
○ 보건교사회: 신중검토 - 학생건강증진이 목적인 학교보건법에 타 법령 상 검사를 포함하는 것은 법 체계 상 부적절하고, 학교보건법의 성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 기초학력진단검사는 기초학력을 보장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기초 학력보장법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임 -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건강검사와 병행될 경우 검사 주체와 책임, 사후 조치 등 과정에서 현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 정신건강 문제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기초학력 수준과 연계 시 정신건강 위기학생은 학습부진 학생이라는 편견을 갖게 할 우려도 있음

문 의 처
02)6788-5184